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채현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44 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채현일・박지원・민병덕

이정문 • 이재강 • 정준호

복기왕・황명선・강훈식

오세희 • 문정복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헌법」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,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「대한민국헌법」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,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,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현행법은 「대한민국헌법」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·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·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1항 전단).

법률 제 호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전단 중 "수색・거주・이전"을 "수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	제9조(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)
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	①
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	
포·구금(拘禁)·압수· <u>수색·</u>	<u>수색</u>
<u>거주·이전</u> ·언론·출판·집회	
• 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	
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.	
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	
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